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현대부실자산관리

2. 조치일 : 2021. 4. 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채권추심활동 관리·감독 미흡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①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추심 담당직원이 방문추심 등 외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추심에 이용함에 따라 통화내용이 저장되고 있지 않으며,

②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추심이력 관리를 개별 추심 담당 직원에게 일임하고, 회사 차원에서 추심 담당 직원에 의한 추심 이력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 및 입력된 추심 정보의 정확성을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속 추심직원으로 하여금 통화내용 녹취가 가능한 법인 휴대전화를 채권추심에 이용하도록 하고, 추심활동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⑵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비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에 부적합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거나 매각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채권매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